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등〉
■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42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안 제45조의2 신설)	2
2.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 (안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	7
3.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15
[참 고]	2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상훈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 20.

다. 회 부 일 : 2025.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경제·민생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는 등 관련 제도 미비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처리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 (안 제4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u>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제45조의2)</u> - <u>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u>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급망안정화기금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협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임. 경제안보품목¹⁾ 및 경제안보서비스²⁾의 확보, 도입 및 공급,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지정된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

2)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지정된 것(「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을 대출,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³⁾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영하며,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방향 등을 심의함.⁴⁾

개정안은 면책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집행자인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과도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임.

유사한 입법례로는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한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

망안정화법」 제2조제5호)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0조(기금의 관리·운영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영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영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 「한국산업은행법」 제41조에서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⁵⁾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⁶⁾에 따라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개정안은 「은행법」 등에 따른 징계 등에 대해 면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수정의견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5)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6)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수정의견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2.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기간의 연장 근거 마련

(안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 기금의 조성기간(부칙 제2조) -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가능	○ 기금의 조성기간(부칙 제2조) -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가능 - <u>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u>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을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일인 2024년 6월 27일부터 5년간 2029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의 조성이 가능함.⁷⁾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회수 자금 등임.⁸⁾

7) 「공급망안정화법」 [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2023. 12. 26., 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8) 「공급망안정화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며,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정부는 2024년에 원화기준 발행액 5조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2025년에 원화기준 발행액 10조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 채권의 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임.

<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실수요 기반) >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기금지원 (A)	9.7	9.7	9.7	9.7	9.7	9.7
대출회수 (B)	0.3	4.9	7.3	8.1	8.7	9.3
채권상환 (C)	-	2.5	5.0	6.9	6.2	8.3
필요자금 (D)=(A)-(B)+(C)	9.4	7.3	7.4	8.5	7.2	8.7
유동성 대응 자금(E)	0.5	0.5	0.5	0.5	0.5	0.5
채권한도(F)=(D)+(E)	9.9	7.8	7.9	9.0	7.7	9.2

자료: 정부,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10월 기금채권의 첫 발행 이후 2025년 3월 기준 5차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총 7,400억원의 재원이 조성되었으며, 총 2조 519억원의 대출이 지원되었고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 출자가 승인되었음. 정부는 향후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임.⁹⁾

<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 분	지원사업	지원금액
대 출	23	20,519
구매자금	19	14,859
시설자금	3	5,200
투자자금	1	460
투 자(공급망안정화 펀드)	1	1,000
합 계	24	21,5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및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공급망 불안정은 단기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핵심 전략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기금의 조성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면 필요 시 정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조성기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을 위한

9)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2024. 12. 29.

재원을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음.

다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에 출범하여 지원을 시작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시기상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므로, 성과평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기금의 지원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재원 조성기간에 대한 연장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기금에 비해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일몰기한 도래시 공급망 상황 및 지원효과 등을 감안하여 연장을 검토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음.

둘째,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유사하게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소부장·공급망 특별회계”)¹⁰⁾의 유효기간이 2029년

1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0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부장·공급망 특별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둔 특별회계로서 당초 2019년 8월 실시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¹¹⁾ 당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년간 설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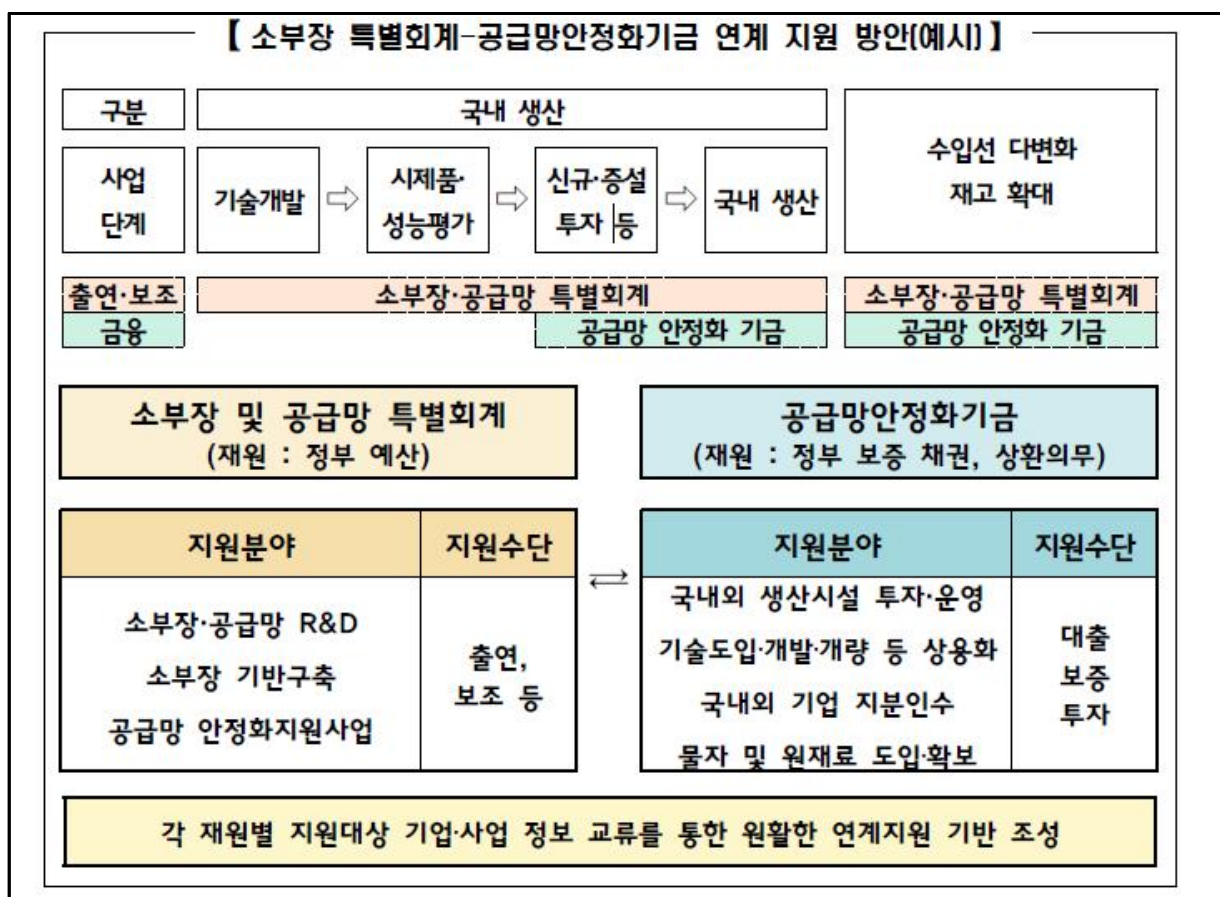
그런데 2024년 12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명이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되고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출연·투자·보조 또는 융자
 - 가.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 나. 신뢰성향상, 실증·성능검증에 관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 다. 인력양성 및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 라.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출자·투자 등 자금지원
 - 마. 기술개발 다각화를 위한 인수·합병, 기술제휴, 기술도입과 관련된 사업
 - 바.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
 - 사.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아. 설비운영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 자.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3.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전부개정)

지로 5년 연장되었음.

정부는 소부장·공급망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소부장·공급망 R&D 등 사업에 대해 출연·보조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운영 등에 대해 대출·보증·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소부장·공급망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상호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임.¹²⁾

< 소부장·공급망 특별회계-공급망안정화기금 연계 지원 방안(예시) >



자료: 정부,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2024. 12. 29.

따라서,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연계하여 운영될 소부장·공급망 특별회

12)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2024. 12. 29.

계는 유효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근거 법률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조성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 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u>할 수 있다.</u>	법률 제19828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 ----- -----<u>하되, 공급망 상황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3.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벌칙(제49조 및 제50조)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음. -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정안은 위기품목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¹³⁾이 지정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¹⁴⁾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

1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 품목등을 포함하여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품목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치를 할 수 있으며,¹⁵⁾ 위기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됨.¹⁶⁾

위기품목이란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품목임. 2025년 3월 5일 현재 기준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위기품목이 지정된 사례는 없음.

긴급수급조정조치란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여 생산량 및 수출입, 운송·보관 등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해당 조치는 최대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참고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는 1976년 법률이 제정된 이래 2019년까지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음. 그러나 최근 마스크(식약처)¹⁷⁾,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산업부)¹⁸⁾, 요소 및 요소수(산업부 및 환경부)¹⁹⁾ 등에 대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발동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1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20.2.12.~'21.5.11. 코로나19 마스크 부족사태로 시행

18) '20.3.6.~'21.6.5. 코로나19 마스크 부족사태로 시행

19) '21.11.11.~'22.3.31. 우리의 요소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19 및 호주산 유연탄 수입금지 계기로 자국 내 요소 생산이 부족해지자, 수출용 요소에 대한 통관절차를 지연함에 따라 국내 요소(수) 부족사태가 발생해 시행

사례가 있음.

매점매석 행위는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임.

개정안과 같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면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금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개정방향으로 보임.

참고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금지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각각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려는 것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과 개정안 간 벌칙규정 비교 >

구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공급망안정화법」
	현행	개정안
긴급수급조정 조치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매점매석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8장 벌칙</u> <u>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u> <u>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매점 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문의처

02)6788-5155

가. 기금설치 목적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

나. 사업의 내용

□ (사업개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원분야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확보, 도입 및 공급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 그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 경제안보품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4항에 의거 지정된 품목

** 경제안보서비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2조 제5항에 의거 지정된 서비스 및 기반시설

○ 지원대상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지원방식 : 대출, 보증, 출자 등

□ (기금 재원조성 규모)

- (연구용역) 기업 IR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선별한 공급망 핵심기업(118개사), 최근 차입금 증가 등 차입가능성이 높은 기업(93개사) 등 총 247개사를 대상으로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 자금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약 7.45조원의 기금 자금수요 확인
- 위 자금수요 7.4조원을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산업 전체의 '25년도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자금수요를 추정한 결과는 10.3조원 수준.
-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80%(Case1) ~ 100%(Case3)의 기금 지원비율을 설정하여 '25년 8.2조원(Case1) ~ 10.3조원(Case3)의 자금수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
- (실수요 기반) 상기 연구용역 수요조사 결과(7.45조원)와 1차 공급망 선도사업자 신청('24.6.27~7.26) 기업의 '25년 자금수요(3.35조원)를 합산하여 도출한 실수요는 10.8조원
- 위 10.8조원을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80%(Case1) ~ 100%(Case3)의 기금 지원비율을 설정하였고, 이중 Case2(적극적, 90%)인 9.72조원을 기준으로 '25년 대출회수, 채권상환 금액 등을 감안하여 채권발행 한도 9.9조원 도출

<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실수요 기반) >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기금지원 (A)	9.7	9.7	9.7	9.7	9.7	9.7
대출회수 (B)	0.3	4.9	7.3	8.1	8.7	9.3
채권상환 (C)	-	2.5	5.0	6.9	6.2	8.3
필요자금 (D)=(A)-(B)+(C)	9.4	7.3	7.4	8.5	7.2	8.7
유동성 대응 자금*(E)	0.5	0.5	0.5	0.5	0.5	0.5
채권 한도(F)=(D)+(E)	9.9	7.8	7.9	9.0	7.7	9.2

* 공급망 위기상황,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유동성 확보

- '25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0조원 한도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발행 필요

(단위 : 억원)

재원조성 방법	구체적 조성방안	금 액
기금채권 발행	공모 또는 사모발행	100,000
차입금	미 정	-
계		100,000

☐ **(지원조건)**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조건
부과 가능

* 이익의 배당(주식배당 또는 현물배당 포함),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 수준이 넘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성과보수 포함)의 인상 등

다. 지원자금 회수 계획

□ 채권만기 상환일정

-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만기 지정

□ 투명한 기금지원 절차 수립, 기금 지원 단계별 전문적·객관적 사업 심사, 지원 사업의 면밀한 리스크 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자금회수 도모

□ ①지원대상 사업확인, ②수은의 금융심사, ③기금운용심의회 의 최종심의 등 단계별 객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지원절차를 거쳐 기금의 지원여부 결정

- **(사업확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부합하는 공급망 안정화 사업 확인

- **(금융심사)** 수은의 금융 심사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사업타당성*, 상환능력** 등 금융지원 타당성에 대한 독립적인 종합 심사를 진행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의 사업 이행능력, 영업기반 및 사업전망 등

** 차주(연대보증인) 및 사업주 등의 신용상태, 상환 계획 등

- **(최종심의)** 국회 추천 2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투명한 심의를 통해 기금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 예정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안) :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2인, 기재부·금융위·산업부·무역협회 각 추천 1인, 수출입은행 임직원 1인 총7인

-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규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생략 및 하부 위임 가능하나, 기금운용심의회에 사후 보고 및 추인 필요

□ 수은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금 맞춤형 관리대상 리스크를 선별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면밀한 사후 관리 등을 통해 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 최소화 및 대출원리금 적기 회수 도모

○ **(리스크관리)** 신용리스크(신용평가, 한도관리, 자산건전성 관리 등), 환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부문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신용리스크) 거래상대방의 부도,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채무 이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 위험
- (환리스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 자산/부채의 손실 발생 위험
- (금리리스크) 금리 변동으로 인한 금리부 자산/부채의 손실 발생 위험
- (유동성리스크) 자금수급 미스매치, 예기치 않은 자금부족 등으로 만기 도래 지급의무를 상환할 수 없는 위험

○ **(사후관리)** 자금집행 후에는 수은의 사후관리 노하우 및 자원을 활용하여 리스크 요인 사전 파악 및 면밀한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대출원리금 회수 도모

- 기금 포트폴리오의 기업·계열·산업·국가별 편중 방지 위하여 각종 한도 관리, 한도 소진율이 높은 부문에 대한 리스크 점검 실시 등
- 자금용도 확인, 차주 신용도 정기점검, 대출금 회수, 조건변경 및 부실사업 관리 등

참고2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규모 추정내역(예시) [자료 : 기획재정부]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 개요
자원개발	경제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주요자원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 광산/유가스전 개발사업 대출/보증
자원가공	개발/확보된 자원(광물, 원유)을 가공(제련, 정제 등)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자원가공 사업 대출/보증
식량안보	민생 고연관 농산품의 자급률 및 안정적인 수입에 기여하는 해외 식량자원 확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식량지원 비축·저장시설 구축자금 대출/보증
오프테이크 파이낸스	개발 예정 광산/광구에서 생산될 산출량의 일정비율을 장기로 구매하는 계약(Offtake Agreement)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장기구매계약(Offtake) 대출/보증
자원도입	자원을 공급하는 기업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자원을 도입하는 거래에 대한 금융 지원 (예시) 자원수요 국내기업 원자재 수입자금 대출/보증
재자원화	사용이 끝난 소재/부품/장비를 회수하여 자원을 추출 및 재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재자원화 영위 국내기업 국내사업 대출/보증
국내 물류 인프라	국내에 구축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항만, 저장시설 등 물류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국내 물류 인프라 운영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해외 물류 인프라	해외에 구축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항만, 저장시설 등의 물류 인프라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 물류 인프라 개발 사업 대출/보증
물류서비스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출/보증
선박·항공	국가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선박·항공기 확보 및 정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예시) 선박·항공기 도입 사업 대출/보증
해외 소부장	국내기업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동반진출 등 해외 소부장 생산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 소부장 생산기지 구축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해외 종합생산	해외 종합생산체계(완성품 생산)를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 생산기지 구축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수입 대체	공급망 중요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기술확보 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국내기업 R&D 자금 대출
리쇼어링	해외 국내기업이 국내로 생산기지를 이전 또는 전환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국내 생산기지 구축 유턴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프렌즈 쇼어링	해외기업이 국내에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해외기업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대출/보증
위기 지원	긴급상황 발생시 해외 원료 및 소부장을 도입하는 국내기업(프렌즈쇼어링 기업 포함)에 대한 금융지원 (예시) 공급망 위기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자금 지원

* ‘프렌즈쇼어링’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해외투자 유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원범위 설정